

이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



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안내

2018년 10월 18일부터 사업안전보건법("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")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-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**서비스의 전문가**로 인정해주세요.
- 종사자도 **내 가족, 이웃**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.
- 서로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**역지사지**의 마음을 간직해주세요.
- 반말, 욕설, 희롱 등 무시하는 언행을 삼가고 **존중**해주세요.

우리 요양원은 직원과 어르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,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어르신, 보호자, 선생님들간의 상호존중,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]에 따른,
시민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

존중해 주세요

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.

반말, 욕설, 성희롱은 안 돼요.

부당한 요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.

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.

무조건적인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.

직원 과실이 아니라면, 무조건 사과할 수 없어요.

주의

모욕, 협박, 폭행, 난동, 성희롱은
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
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**사람**입니다.

폭언과 폭행,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


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안내

2018년 10월 18일부터 「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」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